

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세정지원 대상

- '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(자산총액 2,000억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)인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^{*}으로서
- * '21사업연도(21년 1~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- '23년에 상시근로자 수^{*}를 '22년 대비 2%·3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
- * 상시근로자 수=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/해당연도의 개월 수
 - 근로기준법§43의2에 따라 「체불사업주 명단공개」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

<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>

'21사업연도 수입금액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 ~ 1,500억원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3% 이상

세정지원 내용

- 2021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- *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

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

□ 제출방법

- (인터넷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·전송
- * 홈택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※ 증가인원수,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, [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]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

- (서면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□ 제출기한 : 2022. 11. 30.(수)

일자리 창출 계획서

※ 해당되는 []에 ✓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자

1. 신청인의 인적사항 (본점 기본사항 기재)
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명(상호)		[수도권/수도권외]
대표자	/ [코드] 전화번호	사업장 소재지		
업 종		사업연도	(12)월 결산법인	
2021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	()원	중소기업 여부	[] **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**	

* '17.1.1. 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, 최대 6년 한도)이면서 법인의
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(출자자)

**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 (법인은 본점 기준)

2. 202X년 근로자 고용 계획

구 분	인 원	기 준
① 2022년 상시 근로자 수(기준)	① 수도권 명 ② 수도권 외 명 ③ 증가인원 수 ④ 청년·고령자· 장애인 근로자수 ⑤ 최종 증가 비율 [[@①②③④⑤]/(@⑥)] * 100 단, 청년창업기업과 (청년친화) 강소기업은 [[((@+②)×2+③) ×0.5)]/(@+⑥)]×100	• '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 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• '23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• 최소 1명 이상 • '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 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• '23년에 고용 예정인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 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•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, 음수는 0으로 봄 •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% 수입금액 500억원~1,500억원 미만은 3%이상 이어야 함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※ ④ 음수일 경우 가중치(④×0.5)를 적용하지 않음
② 2023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	② 수도권 명 ③ 증가인원 수 ⑤ 최종 증가 비율 [[@①②③④⑤]/(@⑥)] * 100	
③ 증가인원 수 ④ 청년·고령자· 장애인 근로자수 ⑤ 최종 증가 비율 [[@①②③④⑤]/(@⑥)] * 100	④ 2022년 명 ⑤ 2023년 명 ⑥ 증가(④-⑤) 명	
	%	

※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고용 연도	구분	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												(13) 합계	(14) 개월 수	(15) 근로자수 (=13 ÷ 14)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
2022	상시	수도권 수도권외 청년·고령자등														
	상시	수도권 수도권외 청년·고령자등														
2023	상시	수도권 수도권외 청년·고령자등														

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:

2023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무서장 귀하